

제5주 관세평가협정



유 하 상

관세평가협정

1. 관세 양허 :

(1) 개념

회원국 상호 간의 교섭을 통하여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도록 협상하고 이 결과를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함

(2) 양허의 방법

무관세로의 양허

관세율의 인하 약속

기존 관세율 수준에서 거치 약속(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인상 한계점 약속 :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관세 평가 협정

- 관세의 4대 과세요건 :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및 관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times 관세율, 과세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관세율인하 효과 상쇄
- 과세가격=수입물품의 수량 or 가격(제2의 관세율)
- 관세평가 :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
- 관세평가협정 :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세평가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관세평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기 위함







과세가격 저평가의 부정적 효과

- 수입자의 저가신고 또는 세관의 저평가에 기인함
- 관세수입의 감소, 불공정무역, 부정무역 관세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킴
- 수입자의 약탈적 가격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혼란을 야기시킴



과세가격 고평가의 부정적 효과

-  수입자의 고가신고 또는 세관의 고평가에 기인함
-  조세수입 증가 but 수입자에 의한 국제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초래
-  무역거래를 위장한 불법자금세탁
-  수입제한 효과



협정의 주요 내용

↳ GATT 제7조

- 첫째,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에 의거해야 하며, 수입국 생산 물품가격 또는 자의적이거나 가공적 가격에 의해서는 안됨
 - 실제가격이란 수입국 법에서 정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수입품이 통상의 상거래를 통하여 완전경쟁 하에서 판매되는 가격(FOB or CIF 등)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 독점판매대리인에 대한 특별할인은 불인정, 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채택해야 함
- 둘째,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의 면제액 또는 환급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내국세 면제나 환급을 이유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국경과세조정에 관한 정신을 반영한 것임
- 셋째, 타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IMF회원국은 그 환율은 IMF가 정하는 평가 또는 IMF가 인정한 외환시장에 의할 것, 비회원국은 WTO와의 사이에서 연결되는 특별외환결정에 의한 평가에 의할 것
- 넷째, 관세평가 방법은 무역업자가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 관세상의 평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표될 것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1방법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 방법
 - 거래가격이란 그 물품의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직,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
- 거래가격의 요건
 - ①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가격일 것 ②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 ③가격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④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이 없을 것 ⑤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닐 것

〈圖 1〉

